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나250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혜원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정

변 론 종 결 2022. 8. 16.

판 결 선 고 2022. 9. 27.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단507637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D생)과 피고 사이의 서울 은평구 E아파트 F호에 관한 2020. 10. 27.자 증여계약을
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C(D생)과 피고 사이의 서울 은평구 E아파트 F호에 관한 2020. 10.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 5쪽의 “라. 원고의 가액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며,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0.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1. 3. 19. 주식회사 L에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43,000,000원보다 다액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공동담보가액은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과 같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43,000,000원이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주장한 바 없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은 위 각 금액 중 적은 금액인 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위 증여계약을 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현, 판사 강영훈, 판사 노태헌